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6. 23(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17호

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
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점포 밀집도 기준을 현행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하고, 면적 산정 시 도로, 공용면적,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(안 제3조).

4. 관계법령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, 제11조의 2

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조례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 점포 밀집도 기준을 형행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하고, 면적 산정 시 도로, 공용면적,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.

○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에서 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규제 완화(밀집기준 30개 ⇨ 15)를 지자체 조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함.

※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완료[전통시장과-1429(2025.05.07)호 참조]

○ 본 조례 개정은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경영 여건 개선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 및 자생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붙 임 **관계법령**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[시행 2025. 3. 21.] [법률 제20455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2. 11., 2013. 5. 28., 2015. 11. 20., 2017. 2. 8., 2017. 7. 26., 2018. 6. 12., 2020. 2. 4., 2020. 2. 11.>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제11조(상점가 활성화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, 제21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, 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

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상점가”는 “골목형상점가”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0. 2. 11.]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5. 3. 21.] [대통령령 제35380호, 2025. 3. 11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0. 8. 11.]

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